

#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 1. 제 안 경 위

가. 발 의 자 : 송정빈 의원 외 10명

나. 의안번호 : 제1232호

다. 발의일자 : 2019. 12. 18

라. 회부일자 : 2020. 1. 13

### 2. 제 안 사 유

-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는 상수도 요금부과와 관련된 민원사항에 대한 합리적인 요금의 조정심을 위하여 각 수도사업소별로 구성·운영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는 사회의 다변화에 따른 다양한 민원에 대하여 적절한 대처가 어려우며, 현행 조례 위반 시 제재의 수단으로 부과하는 과태료 처분기준 조문의 해석이 난해하고 위반행위를 구체적으로 서술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에 대한 반감 등으로 민원갈등을 유발하고 있음.
- 따라서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요금 관련 민원의 마지막 구제책인 만큼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합리적으로 대처하고, 과태료 부과 조문과 처분기준을 시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3. 주 요 내 용

- 가.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을 확대하고 심의규정을 명확하게 함(안 제27조제3항, 제27조제3항4호)
- 나. 과태료 규정을 구체적이고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함(안 제44조제2항 삭제)
- 다. [별표 4]를 단순화 하도록 함.

### 4. 참 고 사 항

- 가. 관련 법령 :
- 나. 예산 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
-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 5. 검토 의견

### 가. 개요

- 본 개정조례안은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요금 관련 민원의 마지막 구제책인 만큼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적극 수용하여 합리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며, 과태료 부과 조문과 처분기준을 시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나. 검토의견

#### 1)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심의대상 확대(안 제27조제3항)

-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는 상수도 요금부과와 관련된 민원사항에 대해 합리적인 요금조정심을 위하여 현행 조례 제27조에 따라 각 수도사업소별로 구성·운영<sup>1)</sup>하고 있음.
- 최근 2년간 각 수도사업소별 위원회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위원회를 15회 개최하여 총 27건의 안건을 처리하였고 강서, 남부 등 일부 수도사업소의 경우는 위원회 개최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요금 관련 민원 발생<sup>2)</sup> 건수에 비해 위원회가 그리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최근 2년간 위원회 개최 현황〉

구 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2018	회수	7	2	-	2	1	-	-	-	2
	건수	14	4	-	7	1	-	-	-	2
2019	회수	8	2	-	2	1	-	-	1	2
	건수	13	3	-	5	1	-	-	1	3

1)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 위원장은 수도사업소장이 되고, 위원은 수도사업소 과장과 수돗물에 관하여 관심과 식견이 풍부한 시민 중 수도사업소장이 위촉하는 자  
2) '18년 기준 상하수도요금 이의신청 민원 건수는 총 105건임.

이는 현행 조례에서 위원회 심의대상을 수도요금 과다 부과로 인해 제출된 민원 중 ‘평상시 평균 사용량보다 월등하게 사용량이 증가하는 경우’ 등 4가지 유형으로 특정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또한, 일부 일선 현장에서는 조례상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무지침<sup>3)</sup>으로 심의대상을 확대·운영하고 있는 사례도 있는 바, 조례 위반의 소지가 있음.

〈위원회 심의대상 민원 현황〉

1. 평상시의 평균사용량보다 월등하게 사용량이 증가한 경우
2. 계량기가 비정상인 것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
3. 사용량 증가에 대한 수용가의 귀책사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4. 조례위반 여부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용량 증가원인을 발견할 수 없는 경우

- 따라서 동 위원회가 해결이 어려운 민원에 대한 수용가의 마지막 구제책인 만큼 안 제27조제3항제4호와 같이 보다 광범위한 관점에서 다양한 민원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회의 다변화와 더불어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요금분쟁 해결을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

## 2) 과태료 규정 정비(안 제44조제2항, 별표 4)

- 조례 위반시 제재 수단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 그 처분기준<sup>4)</sup>은 별표 4에 따라 위반 항목을 2개 목(가·나)으로 분류하고 각 목에 대해 위반

3) 지침 비정상 등 기계적 결함, 요금관련 고충민원, 공동사용량 요금민원 등

4) 「지방자치법」 제139조제2항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내용을 8개로 분류하여 총 16개의 처분항목으로 운영하고 있음.

현행 과태료 부과는 부정합 수단으로 수도요금의 징수를 면한 자<sup>5)</sup>와 급수 시설을 부정사용한 자<sup>6)</sup>에 대해 과태료를 처분하고 있으나, 일부 과태료 처분기준 조문이 난해하여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있고 위반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시 민원 갈등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는 바, 과태료 처분기준에 관한 조문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유형별 과태료 처분현황(2018년 기준)〉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계	부정급수 및 공사	계량기 작동 방해 및 훼손	혼용급수 및 연결 급수	계량기 무단 철거 및 이설
건 수	458	25	1	5	427
금 액	97.3	16.8	0.4	2.0	78.1

〈과태료 처분기준 조문 해석 논란 사례〉

- 급수도용은 수도계량기 없이 무단으로 급수하는 경우를 의미함에도 배관을 절관하여 도용하는 것 등으로 잘못 해석
- 승인을 받지 아니한 급수공사는 ‘타인의 급수설비에 승인되지 않은 급수관을 설치한 경우’이지만, 문구 미지정시 승인부서 주체를 구청 또는 수도사업소로 오인하여 해석
- 사설소화전 무단 사용은 소방 목적의 사용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해석

- 따라서 안 별표 4와 같이 과태료 처분기준을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규정하는 것은 과태료 처분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시민들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또한, 시설분담금에 관한 사항은 별도 조례<sup>7)</sup>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안

5) 수도요금을 면한 금액의 2~5배 부과

6) 15~30만원 부과

7)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제44조제1항 중 ‘분담금’을 삭제하고 제2항은 별표 4의 위반내용 항목에 중복 기재되어 있어 이를 삭제하는 것은 타당할 것임.

- 다만, 안 제44조제1항 중 ‘사용료’를 ‘수도요금’으로 통일<sup>8)</sup>할 필요성이 있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안 제27조제3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수정할 필요성이 있음.

---

8) 이 외에 현행 조례 제2조제9호 중 “상수도사용료”를 “수도요금”으로 함.